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929번
- 제 안 자 : 최윤희 의원<찬성자 24명>
- 제 안 일 : 2025년 08월 11일
- 회 부 일 : 2025년 08월 14일

2. 제안이유

- 민주시민교육 업무가 2021년부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음.
- 2023년과 2024년 동안 회의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상설기구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짐. 이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자문 필요성이 있을 때만 운영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법령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도록 변경함(안 제8조제1항).
-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적용 가능하므로 삭제(현행 제9조 삭제)
- 시장이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후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5. 08. 20. ~ 08. 24.)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조례개정안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본 개정안’)은 2014년 제정 당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본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최근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를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도록 개정하고,
- 개정에 따라 위원회(안 제8조제1항)가 비상설화될 경우, 조례 개정에 따라 위원의 해촉(안 제9조), 운영세칙(안 제11조) 등도 동시에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 〉

조 문	주 요 내 용
제8조제1항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필요시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
제9조 (위원의 해촉)	- 현행 제9조 삭제하고,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제11조 (운영세칙)	- 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위원회 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후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하도록 개정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이하‘본 조례’)의 제정 목적(제1조)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지원,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 등이며, 이를 위해 시장의 책무(제5조)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제7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제8조)등을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세부내용 검토

1)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비성설기구로 운영(안 제8조제1항)

- 안 제8조제1항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 ----- ----- ----- ----- ----- -----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 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6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¹⁾이 전무하여 상설 위원회로 운영할 필요성이 적고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의 정비 권고*등을 고려하여 비상설화(안 제8조제1항)하려는 것으로 보임.

1) 평생교육국에 따르면 자문위원회 회의는 2015년 8회, 2016년 2회, 2018년 2회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개최 이후 최근 5년간 실적이 없음.

〈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실적 〉

연도	개최일	구분	회의안건	참석인원(명) (참석/전체인원)	참석률(%)
2015 (8회)	3. 25.	1차	○ 위촉식 및 민주시민교육 방향 논의	13 / 15	87%
	5. 20.	2차	○ 종합계획 수립 방안 및 추진절차	10 / 15	67%
	6. 26.	3차	○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선정심사	6 / 15	40%
	8. 20.	4차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	14 / 15	93%
	8. 31.	5차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용역 보완 토론	5 / 15	33%
	9. 22.	6차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용역 결과보고	9 / 15	60%
	10. 28.	7차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안) 1차 보고	13 / 15	87%
	11. 1.	8차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안) 보완	6 / 15	40%
2016 (4회)	1. 13.	1차	○ '16년 예산편성내역 보고	12 / 15	80%
	3. 25.	2차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안) 보고	12 / 15	80%
	5. 19.	3차	○ 공모사업, 포럼 등 운영계획 안내	10 / 15	67%
	8. 26.	4차	○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 보고	13 / 15	87%
2017 (2회)	4.12.	1차	○ 지원센터 운영계획 보고	14 / 15	93%
	7. 6.	2차	○ 지원센터 '18년 사업계획 검토	10 / 15	67%
2018 (2회)	3. 5.	1차	○ 지원센터 '18년 사업계획(안) 검토	9 / 15	60%
	6.25.	2차	○ 지원센터 향후 위탁 운영방안 논의	8 / 15	53%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요약

- 다만, 본 위원회는 조례 제7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그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2018년 이후 개최실적이 전무한 바, 종합계획 수립을 하지 않을 경우 본 조례는 형해화할 것으로 보여짐.

- 평생교육국이 본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지가 퇴색된 것은 아닌지 점검과 함께 종합계획 수립 시기를 규정하여 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는 없는 지에 대해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 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연도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현황〉

연도	수립시기	수립부서	비 고
2016	2016.4.7.	평생교육담당관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16.~'18.)
2017			
2018			
2019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미수립)
2020	-		
2021	-		
2022	2022.2.15.	시민참여과	·2022년 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 수립
2023	-	평생교육진흥원	·2022.9월 민주시민교육이 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업으로 이관됨 -매년 1월 서울시민대학 사업추진계획에 민주시민교육이 포함 (별도 서울시 종합계획 미수립)
2024	-		
2025	-		

- 또한, 본 개정안에 따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될 경우 위원회의 구성, 개최를 위한 소집, 회의준비 등으로 위원회 개최가 지연될 수 있어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세칙(안 제11조)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4.7.15>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23.7.24>

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전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3.7.24.>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안전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 기본 방향 >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 조례상 위원회	신설 위원회	신설 최대한 억제
	미개최위원회	⇒ 폐지 ⇒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
	비효율위원회 *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 통·폐합 (목적달성) 폐지 ⇒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내부안전) 협의체 전환 (존속필요·안전少) 비상설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행안부→해당부처, 법령정비 요청)	⇒ (사전) 사전협의제도 활성화 (사후)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

2)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삭제 (중전 제9조 삭제)

- 안 제9조는 본 위원회의 비상설 전환에 따라 위원의 임기 중 해촉 규정 (중전 제9조)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u>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 <u>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u> <u>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u> <u>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 <u>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u> <u>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삭 제></u>

- 안 제8조제1항의 단서에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8조제1항과 같이 개정될 경우 위원의 임기는 회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만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의 해촉 규정(제9조)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회의 개최 후 회의 종료 전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의 해촉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5.1.3>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운영세칙 (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안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가 비상설화 될 경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를 통해서만 정하도록 한 제11조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시장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 운영세칙을 따르며,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개정할 수 있다.

- 다만, 시장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할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여지는 없는지, 시장의 과도한 관여여지는 없는지, 중립성이 훼손될 여지는 없는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견제시가 제한될 여지는 없는지 등을 살펴 공정성 및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김 원 진
---------	-------	-------	-------